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450
----------	------

2021년 6월 16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1년 5월 27일, 박기열 의원

나. 회부일자: 2021년 6월 1일

다. 상정일자: 제30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1년 6월 16일 상정·원안 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박기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2011년 3월 제정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은 개인정보의 수집·유출·오용·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고유식별정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집하도록 하고 있음.
- 본 조례의 확인서에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나 11개의 광역자치단체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생년월일(10개 광역자치) 또는 차량번호만(1개 광역자치)을 사용하고 있어 시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대체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별지 서식 확인서 갑지 및 을지의 소유자란 중 “주민(사업자)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”로 하고 운전자란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변경함(별지 서식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4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: 이재효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위반 시 작성하는 확인서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.
- 2011년 3월 개인정보의 수집·유출·오용·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장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,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그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이 개정된 바 있음.
-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확인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은 시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,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서식 확인서 갑지 및 을지의 소유자란 중 “주민(사업자)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”로 하고 운전자란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	개 정 안				
[별지 서식] <u>확 인 서</u>					[별지 서식] <u>확 인 서</u>				
(갑) (행정기관 보관용)					(갑) (행정기관 보관용)				
자동차등록번호				차명(인 증번호)			-----	-----	
차량총중량(kg)		배기량 (cc)			형식 및 년식			-----	-----
소유자	성명(상호)			<u>주민(사업자)등록번호</u>		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
	주 소			전화번호				-----	
운전자	성 명			<u>주민등록번호</u>				생년월일	
	주 소			전화번호				-----	
이하 생략					이하 생략				
<u>확 인 서</u>					<u>확 인 서</u>				
(을) (운전자 보관용)					(을) (운전자 보관용)				
자동차등록번호				차명(인 증번호)			-----	-----	
차량총중량(kg)		배기량 (cc)			형식 및 년식			-----	-----
소유자	성명(상호)			<u>주민(사업자)등록번호</u>		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
	주 소			전화번호				-----	
운전자	성 명			<u>주민등록번호</u>				생년월일	
	주 소			전화번호				-----	
이하 생략					이하 생략				